

퇴직연금 지급청구서 (퇴직 중도인출)

담당	팀장

■ 가입자정보

가입자명		실명확인번호	
휴대폰		임직원여부	<input type="checkbox"/> 임원 <input type="checkbox"/> 직원
입사일자		중간정산일자	
중간정산특례	<input type="checkbox"/> 미적용 (자필기재) <input type="checkbox"/> 적용 (중간정산 당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입금계좌정보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계좌명 :

■ 퇴직청구 *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신청 시,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자필기재)

퇴직사유	<input type="checkbox"/> 중도 <input type="checkbox"/> 정년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사용자 반환(근속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지급형태	<input type="checkbox"/> IRP 현금이전 <input type="checkbox"/> IRP 현물이전 ^{주1)} (당사 IRP로 수령) <input type="checkbox"/> 일시금(만 55세 이상, 세전 300만 원 이하)		
퇴직일자		국민연금전환금	원
DB	지급유형	<input type="checkbox"/> 전액 <input type="checkbox"/> 적립비율	잔여부담금 원
	퇴직급여총액	세전 총 퇴직급여(위로금 등 포함) 원	납입예정일
	지급요청금액	원	가입자부담금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회사지급액	원	제외월수 _____ 개월
	매도상품명	미기재 시 낮은 금리 순으로 매도	(기간 : _____ ~ _____)

주1) 현물이전은 보유 상품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현물이전 이외의 상품이 모두 현금화되는 날 전부 IRP계좌로 이전됩니다. 현물이전 시 현금성자산은 IRP 투자비율에 따른 상품 매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록된 분할매수는 해지됩니다.

■ 중도인출(DC, 기업형IRP)

중도인출 사유	<input type="checkbox"/> 주택 구입 <input type="checkbox"/> 전세금/임차보증금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요양 <input type="checkbox"/>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input type="checkbox"/> 재난 <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연체(임금 감소, 재난)		
신청금액	<input type="checkbox"/> 전액 <input type="checkbox"/> 일부 ^{주2)} (신청금액 : 세전 _____ 원 / 매도상품명 : _____)		
가입자부담금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전액 중도인출만 가능.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및 타사 연금 납입확인서 제출)		
중도인출 서약서 * 해당사항 체크 후 본인서명 (_____ 인 / 서명)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input type="checkbox"/>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주택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무주택자 전세금 / 임차보증금 부담] <input type="checkbox"/>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주택이 없으며, 재직 중 1회만 신청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6개월 이상 요양] <input type="checkbox"/>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1년간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였으며, 본인이 부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실손의료보험금을 [<input type="checkbox"/> 지급받지 않았음, <input type="checkbox"/> 지급받았다면 해당 증빙을 제출할 것]을 확인합니다. (전년도 임금총액 : _____ 원 X 12.5%) < (실손의료보험금 제외 의료비 합계 : _____ 원)		

주2) 현금성자산이 부족한 경우 105%에 상당하는 자산을 매도합니다.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현금성자산으로 운용됩니다.

■ 임원(DC, 기업형IRP)

임원퇴직소득한도 ^{주3)}	원	회가지급액(위로금 등)	원
2011/12/31 이전 한도계산 방법	<input type="checkbox"/>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 미제출(근무기간 안분 방식) <input type="checkbox"/>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 제출(2011/12/31까지 퇴직급여 : _____ 원)		

주3) 임원퇴직소득한도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를 확인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한도가 초과된 금액은 회사로 반환되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후 가입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인출 시 임원은 전액 인출만 가능하며, 중도인출 지급일까지의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중도인출 이후의 임원퇴직소득한도가 과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퇴직연금 지급 접수 이후 상품 운용지시는 불가(ETF 매매 포함)하며, 접수 이후 납입되는 부담금은 현금성자산으로 운용됩니다.
- 보유 상품 매도 기간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지급 될 수 있습니다.
-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서류의 내용을 근거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며 오류 작성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가입자명 _____ (인 / 서명) 회사명 _____ (인)

■ 퇴직연금 지급 청구 시 구비서류

DC형 퇴직청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퇴직연금 지급청구서, IRP계좌 확인서 2. 가입자부담금 있는 경우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국세청 발행), 연금납입확인서(타사에 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3. 중간정산 특례 적용을 받는 경우 : 중간정산 당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4. 가입자가 자필 서명이 불가한 경우 : 퇴직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사직서 등)
DB형 퇴직청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퇴직연금 지급청구서, IRP계좌 확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가입자가 자필 서명이 불가한 경우 : 퇴직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사직서 등)

■ 중도인출 사유별 구비서류

공통		1. 퇴직연금 지급청구서 2. (별지0071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용] 3. 실명확인증표 사본(원본 크기)
무주택자 주택구입 * 소유권이 이전이 완료된 경우 등기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무주택자 확인서류 (공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등본 or 주민등록초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주민등록등본상 최종 주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_제출용 or 건축물대장_제출용(열람용 불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재산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시 확인사항] 관할 자치단체 : 전국 자치단체 / 과세 연도 : 직전 연도~신청 연도(최근 2개년) / 세목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 특정지역에 재산세(주택) or 취득세(부동산) 납부 사실 있는 경우 : 해당 지역 과세증명서 & 과세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 납부 지역 이외의 나머지 자치단체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매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매 계약서 사본 2. 계약금 납입 영수증, 중도금 납입시점 이후인 경우 중도금 납입 영수증(입금 확인서 등) - 중개인 없는 당사자 간 계약 : 계약금 및 잔금 이체내역 확인서(영수증 불가), 매수한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_제출용 - 가족 간 거래인 경우(등기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중도인출 신청 가능) : 매수한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_제출용
	분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양 계약서 사본(분양권 매수 시 : 최초 분양권자와 가입자와의 매매 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2. 계약금 납입 영수증, 중도금 납입시점 이후인 경우 중도금 납입 영수증(입금 확인서, 분양대금 납입확인서 등) 3. 분양권 입주 예정일 또는 입주 예정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 분양사무소에서 발행한 분양대금 미납확인서 or 납입확인서
	임대 종료 후 분양전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 분양전환 계약서 사본 2. 미납 확인서 or 납입 확인서
	주택 상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허가필증(주택용) or 건축신고필증 사본(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미 착수 시 추가 서류 : 착공 연기 확인서) 2. 건축설계 계약서 및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3.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or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사본 4. 주택 상속 계약이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금 입금 확인서 등)
경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원의 매각허가결정문 사본 2. 법원의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 사본 3. 부동산 매각 보증금 영수증 사본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재직 중 1회만 신청 가능 * 전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 전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등본 or 주민등록초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주민등록등본상 최종 주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_제출용 or 건축물대장_제출용(열람용 불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재산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시 확인사항] 관할 자치단체 : 전국 자치단체 / 과세 연도 : 직전 연도~신청 연도(최근 2개년) / 세목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 특정지역에 재산세(주택) or 취득세(부동산) 납부 사실 있는 경우 : 해당 지역 과세증명서 & 과세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 납부 지역 이외의 나머지 자치단체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4.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계약 연장의 경우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구 계약서 추가 제출 5. 계약금 납입 영수증, 중도금 납입시점 이후인 경우 중도금 납입 영수증(입금 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	임금총액 증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or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or 급여명세서 단,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간 임금총액이 직전 연도 임금보다 낮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 가능
	요양기간 증빙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사 진단서 or 소견서 or 진료확인서 or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병명(질병코드)명시, 직전 1년 동안 '6개월 이상 요양·치료·투약과 같은 의료행위'가 진행 중 또는 예정임을 명시 - 요양이 종료된 경우는 요양 종료일을 명시해야 하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의료비 지출 증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시점 직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등(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지출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증빙 불가 2. 신청 시점에 지출이 확정된 1개월 이내의 의료비 청구서·의료기기 견적서(단, '향후 의료비 추정서'는 증빙 불가) - 의료기기 구입·임차 견적서로 신청하는 경우 병원 등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보장구 사용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or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등 기기 필요성 입증자료 제출 必
	부양가족 확인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부양가족 범위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①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 ②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④ 장애인(나이불문,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등 제출)
개인회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or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사건 개시 결정일 기준) 2. 인터넷 대법원[나의 사건검색] 출력 : 개인회생 개시 결정일 및 면책·폐지 결정 여부 확인(면책·폐지 결정된 경우 중도인출 불가)
파산선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파산 선고문(개인파산 결정문) -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사건의 선고일 기준) 2. 인터넷 대법원[나의 사건검색] 출력 : 파산 선고 일자 확인(면책·복권 결정된 경우도 중도인출 가능)
재난 *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실종은 최대 1년)	물적 또는 인적 피해의 범위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이 재난 발생 지역으로 주거시설이 피해를 받은 경우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단, 실종의 경우 최대 1년 이내 신청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적 피해 : 주거시설 등이 침수 파손 유실 매물, 반파 등으로 50%이상 피해 2. 인적 피해 : 근로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 또는 근로자가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확인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적 피해 : 주민등록등본 and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건축물대장, 피해사실확인서 or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2. 인적 피해 :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① 부양가족 실종 : 실종 신고접수증 or 사건조사사실확인원 등 ② 근로자의 15일 이상 입원 :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 15일 이상 입원치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퇴직연금 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연체 (임금감소, 재난)		휴업에 따른 임금감소, 재난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받은 경우로 담보제금을 설정 받아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질권설정 범인만 해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의 휴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임금이 감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or 재난피해 관련 서류(재난 피해 확인 서류 참고) 3. 원리금의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재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한 정보의 제출을 거부하시거나 검증이 불가능할 경우 거래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공하신 정보와 자료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됩니다.